

# 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3.10.31(목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3.11. 12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13.11. 12(화)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)

-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('13. 12. 12)에 맞추어 기능직·별정직·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고자 함.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2013년 12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우리군 조정이 있는 부분은
  -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77명(전기12, 기계25, 운전20, 조무10 등),
  - 별정직 6급상당 농기계교관 1명 지방전문경력관 전환
  - 전임계약직 군수비서 1명 별정직 전환,
  - 디자인, 기록물관리, 평생교육 전임계약직 3명에 대한 임기제 공무원

전환 등 4개 분야입니다.

《『지방공무원법』 부칙 제4조(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·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·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**별정직공무원**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》

- 본 개정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정원 외 인력인 “임기제 공무원”을 제외한 인력조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단서 중 “정원은”을 “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은”으로 한다.

별표 1부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**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**

구 분	일 반 직	별정직·정무직
비 율	99% 이상	1% 이내

- 비 고 : 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·지도직,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.  
2.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2]

**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**

**1. 일반직공무원**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 경력관
비 율	1%이내	5%이내	23%이내	29%이내	26%이내	15%이상	1%이내

비 고 : 1.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  
2.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**2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**

구 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-	100%	6% 이내	94% 이상

비 고 :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**3. 별정직공무원**

구 분	5급상당 이상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비 율			100%		

비 고 : 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  
2.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**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**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591	591				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568	568				
4급	2	1		1		
4~5급	2	2				
5급	25	10	2	4	1	8
6급 이하	538	538				
전문경력관 소계	1	1				
연구직 계	2	2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2	2				
지도직 계	19	19				
지도관	1			1		
지도사	18	18				
별정직 계	1	1				
7급상당 이하	1	1				